

정 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정관

제정 2017. 10. 13.
개정 2019. 01. 10.
개정 2019. 02. 22.
개정 2021. 09. 09.
개정 2022. 02. 23.
개정 2022. 04.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위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행위중독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비용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및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치유서비스 제공
 2. 산림교육치유 콘텐츠 개발, 보급 및 교육
 3. 행위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
 4.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영월군에 둔다.

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9인 이내
 - 2. 비상임감사 1인
- ②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될 경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한다.
- ④ (주)강원랜드 임원(1인), 산림청의 산림교육 및 치유관련 담당부서장, 영월군의 지역 개발사업관련 부서장은 그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②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8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본 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8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안건과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법인과 이사회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이사회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이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사회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

- ①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서비스 수혜자, 공익분야 대표 등)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직원

제22조(사무국)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및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

-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6조(경비의 조달방법)

- 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사업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기타 수익금
-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이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 사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의 제·개정)

① 법인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 ①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권은 법인에 귀속한다.

②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5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된 업무는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 및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및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정관 개정일 이후 취임하는 임원에 적용한다.

2022. 4. 25.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법인도장)

이 사 오 정 훈 ①

이 사 윤 차 규 ①

이 사 김 주 미 ①

이 사 엄 재 만 ①

이 사 조 영 택 ①

이 사 민 성 호 ①

기 본 재 산 목 록

(2019년 2월 22일 기준)

재 산 명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금	1	100,000,000원	
토지	40필지 (194,184m ²)	5,371,847,880	2018년 공시지가 기준
계		<u>5,471,847,880원</u>	

보 통 재 산 목 록

(2019년 2월 22일 기준)

재 산 명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금	1	11,100,000,000원	
건축물	9,189,45m ²	7,927,008,900원	2018. 12. 31. 상동테마파크 출연(증여)
구축물	8식	873,800,000원	2018. 12. 31. 상동테마파크 출연(증여)
비품	90대	187,481,000원	2018. 12. 31. 상동테마파크 출연(증여)
계		<u>20,088,289,900원</u>	

재 산 목 록 총 괄

(2019년 2월 22일 기준)

총 계	₩25,560,137,780원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m ²)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토 지	194,184	5,371,847,880	(주)상동테마파크	
		출연금		100,000,000	(주)강원랜드	
		소 계		5,471,847,880		
2. 보통재산	품 목		수 량	종 류	금 액(원)	비 고
	출연금		1	현금	11,100,000,000	
	건축물		9,189,45m ²		7,927,008,900	
	구축물		8식		873,800,000	
	비품		90대		187,481,000	
	소 계				20,088,289,900원	

작성자 :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오 정 훈 (날인 또는 서명)